

의안번호	제2778호
의 결	2024.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4. 5. 2.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석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8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김석한,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의원(5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유농업” 등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전문가의 자문 등 교육 강사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24호

- 예고기간: 2024. 5. 8.(수) ~ 5. 13.(월)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